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0호)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3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0호)	1
2.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3호)	2
III . 검토의견	3
1.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박정하의원안, 김승수의원안)	3

I. 제안경위

연번	구분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70호)	박정하의원 등 10인	2026.2.13.	2026.2.19.
2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83호)	김승수의원 등 11인	2026.2.19.	2026.2.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0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2.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3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박정하 의원안, 김승수의원안)

현행	개정안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 세액공제 요건 -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9. 12. 31.</u>(박정하의원안) <u>2031. 12. 31.</u>(김승수의원안) ○ 시행일: 2027. 1. 1.

* 박정하의원안 2026. 2. 13. 발의(의안번호 16870), 김승수의원안 2026. 2. 19. 발의(의안번호 16883)

- ☐ 개정안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박정하의원안: 3년, 김승수의원안: 5년)하려는 것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에 따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
한 과세특례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과세특례로서,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¹⁾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2호²⁾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 상금,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임.³⁾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 규모는 22조 9,462억 원으로 2022년 22조 2,149억원 대비 3.4% 증가했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확대로 게임시장이 2020년에 21.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성장률 자체는 둔화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 성장하고 있음.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14~2023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6.5% 감소한 83억 9,400만 달러(10조 9,576억원)로 집계되었음.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6,657,777	8,193,562	8,672,865	8,981,751	8,394,003
증감률	3.8	23.1	5.8	3.6	△6.5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전체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7.8% 상승한 2,569.5억원이었음.

전체 산업규모 중 게임단 예산이 1,1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업 매출은 959억 2,000만 원으로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포츠 산업규모 세부 현황(2022~2023년)]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산업규모	2,383.0	2,569.5	7.8
상금규모	216.4	190.1	△12.2
게임단 예산	963.0	1,115.5	15.8
미디어업 매출	862.5	959.2	11.2
종목사 매출	199.0	186.0	△6.5
데이터 플랫폼 매출	142.1	118.7	△16.5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3년 이스포츠 대회 수는 전년 대비 4개가 감소한 216개로 나타났다고, 상금 규모는 190억 1,000만원으로 2022년 216억 4,000만 원 대비 12.2% 감소하였음.⁴⁾

[이스포츠 대회 및 상금 규모(2022년·2023년)]

(단위: 개, 억원, %)

대회 수			상금 규모		
2022년	2023년	증감률	2022년	2023년	증감률
220	216	△1.8	216.4	190.1	△12.2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편, 이스포츠의 근거 법률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가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4) 조사 대상은 1) 글로벌 종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 또는 2) 우리나라 소속 이스포츠 주체가 개최하는 대회로,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개최되는 국내외의 모든 대회’임

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⁵⁾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⁶⁾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스포츠 종목사의 매출은 중계권, 스폰서십/광고, 티켓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 종목사 매출은 186억원으로 2022년 매출

5) 종목선정 기관은 한국e스포츠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9억원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4년에는 이스포츠 종목사가 이스포츠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전문인력은 종목사별 평균인원이 9.5명으로 전년 21.6명 대비 감소했음.

이와 같이 이스포츠 종목사의 매출과 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종료되면 비용 부담증가로 이스포츠대회 운영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 이스포츠 대회 개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체적인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의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촉진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동 조세특례는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포츠 대회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민간경기장은 9곳인데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정부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비수도권의 지역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곳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늘어나면서 비수도권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조세특례는 2025년 초에 최초로 시행될 때 적용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었음.⁷⁾

문 의 처

02)6788-5155

7)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소관부처 성과평가 및 제도 필요성·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